

검체검사(병리) 위탁 계약 특수조건

제1조(일반사항)

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(이하 “갑”이라고 한다.)와 위탁기관(이하 “을”이라고 한다.)의 용역 계약 특수조건은 각 조를 따르며, “갑”은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검사를 “을”에게 위탁하고 “을”은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.

제2조(입찰참가자격)

- 가. 보건복지부고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(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)에 의거 자격을 갖춘 기관
- 나.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[검체검사수탁업(1447)]으로 등록한 기관
- 다. 최근 3년 이내에 허가병상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검체검사 수탁 실적이 있는 기관
- 라. 병리과 전문의 수가 11인 이상인 상급 기관
- 마. 입찰 참가 시점에 유효한 다음의 인증서 1), 2)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관
 - 1) 대한병리학회, 대한세포병리학회 정도관리 인증 및 수탁검사기관 인증서
 - 2) 한국 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 검사정확도평가 인증서
- 바. 대한병리학회에서 실시하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을 모두 실시하고 있는 기관

제3조(검사의 의뢰 및 검체 수거 확인)

- 가. “갑”은 검체의 채취 및 보관을 위한 모든 조치를 “을”이 수거 시까지 행하고 수거 후에는 “을”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.
- 나. “갑”은 검체 수탁 시 수탁 검체 목록을 서면으로 통지하며, “을”은 통지 후 당일 의뢰 검체는 위탁 당일 직접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다. “갑”은 검사의뢰 대장을 비치하여 검사물 수거 시 “을”과 상호 날인함으로써 검사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라. 검체 수거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(월~금 오후 4시 이후,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이후) 근무종료 1시간 전부터 수거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쌍방에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.(단,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- 마. “을”은 “갑”이 의뢰한 검사물의 보관, 수거, 운송을 위하여 적절한 실온, 냉장 및 냉동 등의 설비를 갖추어 분실, 손괴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하며, 분실·손괴로 인한 책임은 “을”이 진다.
- 바. 재검사, 검체 분실 등 사유로 추가 검체를 요구 시 담당과에 유선으로 내용을 전달하며, 검사 및 결과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.
- 사.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응급검사가 필요한 경우, “을”에게 검사물의 수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4조(검사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)

- 가. “을”은 의뢰한 검사물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물을 수거한 후 지체없이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, 검사하는 날을 정하여 실시하는 항목은 예외로 한다.
- 나. 검사결과의 부정확에 대한 타당한 의심 또는 재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재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비용은 무상으로 한다.
- 다. “을”은 검사결과를 지정된 검사 소요일로부터 1일 이내 전산시스템으로 통보를 원칙으로 하며, 재 위탁되는 검사 결과는 검사 소요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업로드 또는 담당과 및 의뢰과에 직접 전달한다.(이 외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)
- 라. 검사 결과의 업로드 주기는 월~금요일 1일 2회, 토요일 1회, 방식은 방문 또는 수시 원격으로 시행한다.
- 마. 상기 (가)~(다)에도 불구하고 응급을 요구하는 검사의 경우, 별도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 항목에 대해 응급으로 결과보고 한다.
- 바. 검사가 “을”에서 기존 공개된 TAT보다 지연되어 진행 또는 보고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선 통보하고, 2일 이내에 정식 통보하여야 한다.
- 사. “을”은 검체 및 용기종류, 검사방법, 결과단위, 참고치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, 검사에 필요한 검체용기를 무상 공급한다.

제5조(관리 의무)

“을”는 검체의 분실 또는 손괴, 부정확한 결과 및 검사결과 통보지연 등으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약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손해배상책임 및 정도관리 협조)

- 가. 검사결과는 환자의 생명과 관계되므로 “을”은 의뢰받은 검사물의 정밀한 분석 및 검사결과에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나. “을”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, 기 타권리,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검사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다. “을”은 계약기간 중 “갑”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사물의 분실, 손괴, 운반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검사결과의 지연과 오류, 누락 등으로 인하여 환자 또는 “갑”의 대외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 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, 이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과 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라. 쌍방의 검사실에서 정도관리의 필요에 의한 검체는 서로 협조하여 처리한다.

제7조(검사료)

- 가. 계약기간 중 의료보험수가 변동 시 수탁의뢰 가격은 변동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수가의 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검사단가는 심사평가원 기준수가(보험 및 비급여보험 기준단가)에 질가산료*를 포함한 금액을 검사단가라 한다.
- *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행위 제2장 검사료 「검체검사 질 가산을 산출 및 적용기준」
- 나.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 검사항목 의뢰 시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낙찰율(계약단가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)로 산정하여 계약한다. 단, 수탁업체에서 검사하지 않아 재 위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재위탁기관의 검사료에 따라 검사료를 협의할 수 있다.

제8조(검사비용 청구 및 지급방법)

“을”은 “갑”에게 검사료 청구를 매월 말일 기준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회별 청구 하고, “갑”의 결제기준에 의하여 지불한다.

제9조(계약기간)

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~ 1년 까지로 한다.(자동연장 1년 가능)

- * 단, 계약 만료 시점에 신규 수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에서 기존 계약 단가로 검체검사 실시

제10조(계약 해지권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“을”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- 가.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물 수거 및 결과 통지를 지체하여 환자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
- 나. 검사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
- 다.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
- 라. 파산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
- 마.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최종 판정한 경우

제11조(계약해석의 우선순위)

계약 내용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. 다만,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, 특례규정 등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.

1. 계약서, 2. 검체검사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, 3. 과업지시서 등

제12조(변경사항 통지)

“을”은 주소, 상호, 대표자,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,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“갑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“갑”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“을”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3조(기타)

이 계약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,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한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.